

부산광역시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4월 30일

부산광역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1.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법률, 2025. 7. 1.)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2025. 10. 1.)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2026. 1. 2.)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2025. 6. 2.)
-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부산광역시의회규칙, 2025. 12. 10.)

2. 임용 예정 분야 및 인원 ▶ 2개 분야 2명

임용분야	근무예정부서	임용등급	인원
정책지원관(행정)	부산광역시의회 (담당관 또는 전문위원)	행정6급(일반임기제)	1명
정책지원관(행정)	부산광역시의회 (담당관 또는 전문위원)	행정7급(일반임기제)	1명

※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사업 계속 시)

2-1. 임용분야 주요직무(공통)

임용분야	주요직무
정책지원관 (행정)	○ 조례 제정·개정·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 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 정책개발 및 연구과제 수행 ○ 자치법규 자료조사 및 입안 등 의원 입법활동 지원 ○ 행정사무감사·조사,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의원의 시정 질의서, 5분자유발언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 의원연구단체 지원 및 입법 관련 정책연구용역 수행 ○ 그 밖의 시의원 의정활동 지원

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공직선거법, 병역법,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해당자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자격요건[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임용분야	임용등급	자 격 요 건
정책 지원관 (행정)	일반 임기제 (행정6급)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 분야 실무경력 인정 범위> 국회, 지방의회,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행정기관 및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대학 및 대학에서 설립한 연구소, 기업체에서 임용분야 주요직무를 수행한 경력 * (국가행정기관 산하 공공기관) '26. 1. 29. 재정경제부 지정, 342개 공공기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정책 지원관 (행정)	일반 임기제 (행정7급)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 범위> 국회, 지방의회,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행정기관 및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대학 및 대학에서 설립한 연구소에서 임용분야 주요직무를 수행한 경력 * (국가행정기관 산하 공공기관) '26. 1. 29. 재정경제부 지정, 342개 공공기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 경력요건의 경력 계산 시 민간 경력(1, 2번)과 공무원 경력(3번)은 합산이 불가함

※ 학위취득 과정은 관련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임용분야 실무경력 인정 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및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임용 후 수행 예정인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력이어야 함. 다만,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 예정 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예: 주20시간 근무)

4. 보수 수준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6급(상당)	86,606천 원	57,708천 원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35조제3항에 따라 인력 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 하는 금액으로 연봉 책정 가능
7급(상당)	70,782천 원	50,272천 원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시험일정 ※ 시험일자, 시험장소, 합격자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

공 고	원서접수	시험구분	시험일자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26. 4. 30.(목) ~ 5. 11.(월)	'26. 5. 11.(월) ~ 5. 14.(목)	서류전형	'26. 5. 21.(목) ~ 5. 22.(금)	시의회사무처	'26. 5. 26.(화)
		면접시험	'26. 5. 29.(금) ~ 6. 1.(월) ※ 임용점검위원회 (합격자 결정 전)	시의회사무처	'26. 6. 12.(금) 이내

나. 1차 시험(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제5항)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아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제4항)

심사항목 배점기준	일반요소			전문요소		
	소계	자 기 소개서	직무수행 계 획 서	소계	관련분야 근무경력	근무경력 직무연관성
100	60	30	30	40	30	10

※ 서류전형 평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응시자 적의 판단하에 접수기간 내 기타서류 제출

다. 2차 시험(면접시험) (면접시험 평정표에 의거한 개별면접)

○ 평가방식 : 5개 평정요소*당 상(20~16점), 중(15~11점), 하(10점 이하)로 평가

*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평정점수(항목별 점수 합계)가 가장 높은 자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하였을 경우 불합격 처리함

※ 동점자가 있을 경우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하되, ‘중’의 개수도 동일한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합격자로 결정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부산광역시의회 및 시 홈페이지 게시(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6. 5. 11.(월) ~ 5. 14.(목) 09:00~18:00(12:00~13:00 제외)

다. 접 수 처 :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정책관 인사팀(시의회 2층)

라.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메일, 택배,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 ▶ 우편주소 : (우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정책관 인사팀 임기제 채용담당자 (☎051-888-8334)
- ▶ 우편접수시,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를 함께 우송(미 동봉시, 접수불가)
- ▶ 등기우편은 반드시 담당자 전화확인 후 송부
- ▶ 원서접수기간 이전 소인은 인정하지 않음

마. 유의사항

-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원서접수기간 내의 우체국 소인이 있는 경우만 유효한 접수로 인정(발송 기준)
- 시험시행기관은 접수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보완기한은 접수(우편도착) 익일까지로 한정하며, 접수기간 이후 신규 서류제출 불가
- 응시번호와 면접순서는 별개로 부여 예정

7.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②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수수료 : 6~7급(나~다급) 7천원

- 부산광역시 수입증지(부산시청 2층 통합민원과(행복민원실)에서 구입) 날인
- 우편 제출할 경우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증명서 제출

*상기 내용 중 미성년 자녀는 2007. 5. 12. 이후 출생 자녀가 해당(원서접수일 기준)

- ③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

-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⑥ 학위증서 또는 졸업증명서 각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모두 제출,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증명서 제출

- ⑦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
-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의 경력 인정되는 **직무내용이 기재가 안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 제8호 서식>'** 추가 제출

- ▶ 경력증명서의 담당업무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근무경력 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강사, 프리랜서 등)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 폐업기관의 경우 ①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국세청 홈택스 발급가능), ②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류* ①, ② 모두 제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 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개 선택
-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⑧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으로 발급
- ▶ 경력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 일치할 경우 경력 인정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미기재 경력은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⑨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⑩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⑪ 증명사진 1매 : 3.5×4.5cm(최근 6개월 이내)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별지 제8호 서식>

② 업무관련 자격증 또는 외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사본)(총 5점 이내)

-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 불가

③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논문 등 관련 증빙자료

- ▶ 각종 대회 수상·상훈은 **3점 이내로 한정**
- ▶ 학위논문 제출시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자유서식)하고 표지 및 서론 사본 제출
- ▶ 연구실적은 경력인정 범위 내 작성되어야 하고 **2점 이내로 한정**

④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⑤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 증빙서류

다.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단, 어학능력은 유효기간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증명서)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 필요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함께 첨부(미제출시 인정 불가) ※ **최종 합격 시 사실 공증**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관련 서류를 반환함
-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함

8. 기타 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철저히 확인한 후 출원 요망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자(서류전형 적격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 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함

-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용 포기, 임용결격 사유,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차순위자가 동점일 경우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근무경력 기간이 긴 차순위자를 우선 선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에 따라 영리업무가 금지되며,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함
- 시험장소 안내, 합격자 발표 등 시험 시행에 관한 모든 사항은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busan.go.kr>) '**고시공고**'에서 응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본 임용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시행 7일 전에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험 및 임용 관련 규정·절차에 따라 추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정책관 인사팀(051-888-8334)으로 문의 바람

붙임 1. 직무기술서 각 1부.

2. 응시자 제출서류 서식 1부. 끝.